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 12. 6.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1월 20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7년 11월 20일
- 다. 상정일자 :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2017년 12월 6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가. 폐지이유

-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 및 기금 존속기한 도래
(존속기한 : 2017.12.31)
- 상암동 택지개발사업이 종료되었고 향후에도 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
계획이 불투명한 실정임

나. 기금재정현황

(단위 : 백만원)

총 수 입			총 지 출			잔 액
합 계	징수금	이자수입	합 계	서울시납부	마포구집행	
10,028	9,045	983	10,010	8,104	1,906	18

※ 상암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되어 2010년 이후 기금 징수실적 없음

3. 검토보고 (전문위원 유준상)

○ 본 폐지조례안은

상암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를 위해 제정되었으나, 택지개발 사업이 모두 종료되었고, 향후에도 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5조 기금의 통합·폐지에 따라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